

광주광역시서구청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2000년 “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”에 따라
- 광주광역시서구청·반설치조례 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반장 위촉의 경우 “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를 우선 위촉한다”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2항제2호)

3. 검토의견

이번 개정안은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”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청·반설치조례 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.

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반장의 위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, “일반 예비군 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”는 단서규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남녀간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로써 헌법상의 평등권(헌법 제11조제1항)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, 이미 남녀차별법령·법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정비대상 법규로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.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헌 법

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